



■ 환경개선부담금이란

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

■ 부담금 부과대상

● 부과대상

- 자동차 :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

■ 부과기간 및 납기

● 정기부과

반기별	부과기간	납기
상반기분	1월 1일 ~ 6월 30일	9. 16. ~ 9. 30.
하반기분	7월 1일 ~ 12월 31일	다음연도 3. 16. ~ 3. 31.

■ 부과금 산정기준

- 자동차 : 기준부과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

■ 납부방법

-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
- 위택스(<http://www.wetax.go.kr>), 인터넷 지로 납부
-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

■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

-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
-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
- 자연환경보전사업